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4. 1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4. 5.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22. 4. 6.
- 다. 상정일자: 제2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4. 1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상위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2)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안 제3조)
- 3)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안 제5조)
- 4)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안 제6조)
- 5)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및 환수(안 제7조 ~ 제10조)
- 6)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11조 ~ 제22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되어 이관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기존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4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과 공모절차,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그리고 법령 내용과 중복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여 알기 쉽고 일목요연한 법령체계로 정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지방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동 조례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한 것은 위원 위촉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참고자료】

※ 지방보조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의 비교

| 구 분 | | 지방보조사업 | 민간위탁사업 | 비 고 |
|-----|----|----------------------------|--------------------------|-----|
| 대 상 |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사업) | |
| 근거법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
| 예산 | 배정 | 사업비의 일부 부담 원칙 | 위탁비용 전체 부담 | |
| | 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위탁금(사업비) | |